

세법개론 나책형 해설

1. 답 ③

\*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

1. 주권상장주식 - 대주주 양도, 장외양도

2. 비상장주식

\*양도소득세율

| 구분        | 대주주가 양도                | 대주주 이외의 자가 양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 주식   | 20%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|
| 중소기업 외 주식 | 20%<br>(1년 미만 보유시 30%) | 20%           |

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
: 10%

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: 20%

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: 과세제외

2. 답 ④

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

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.

$$\text{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한도} = \text{소급 1년간 총급여} \times \frac{1}{10} \times \text{근속연수}$$

3. 답 ③

③ 조세법 규정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의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된다.

4. 답 ①

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.

5. 답 ④

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(파손·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)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. 다만, 파손·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.

②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.

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금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, 그 평가손익을 영업외수익(영업외비용)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(손금불산입) △유보(유보) 처분한다.

6. 답 ②

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.

$$\begin{aligned} 2018.2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&= 1천만원 \times \frac{4천만원}{1억원} \\ &= 4백만 원 \end{aligned}$$

7. 답 ③

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·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8. 답 ④
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은 국선세무대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
2.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일 것
3. 3천만 원 이하의 청구일 것
4. 상속세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일 것

9. 답 ②

②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, 기간별로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.

10. 답 ③

1. 총액법에 따른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

(손금산입)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,000,000 △유보

2. 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

(1) 회사 손금산입액 : 15,000,000(총액법에 따라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)

(2) 세무상 손금산입한도 : 기말매출채권잔액 × Max[대손실적률, 1%]

$$= 300,000,000 \times \text{Max}\left[\frac{10,000,000}{250,000,000} = 4\%, 1\%\right]$$

$$= 12,000,000$$

(3) 한도초과액 : 15,000,000 - 12,000,000 = 3,000,000

(4) 세무조정

(손금불산입)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3,000,000 유보

3.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결과가 제17기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

$$-3,000,000 + 3,000,000 = 0$$

11. 답 ①

②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.

③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, 국세, 가산금으로 한다.

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없다.

12. 답 ④

①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·

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.

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 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.

13. 답 ④

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4. 답 ②

① 물납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채 및 공채가 부동산보다 먼저이다.

③ 국내소재 부동산만 물납할 수 있다.

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

15. 답 ①

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라면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.

16. 답 ②

1.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계산

손금산입한도 =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) + 배당소득 + 수익사업소득 × 50%(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%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 80%)

= 1억원 + 1억원 × 50%

= 1억 5천만 원

2.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: 2억원 - 1억 5천만원 = 5천만원

17. 답 ④

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.

18. 답 ③

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날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
19. 답 ④

④ 간이과세자는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환급하지 아니한다.

20. 답 ②

과세표준 = (50,000,000-5,000,000) + 20,000,000

= 65,000,000원

●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불포함한다.

● 실지 공급의 경우 실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- 양도담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.